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999. 12. 7.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1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67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 ('99. 12.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은 규

가.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성산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구립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1	대지	마포구 성산동 595-1	399.5	605,000	2000년도 1/4분기	장애인종합 복지관부지	○ 토지대장 : 서울특별시 ○ 실소유자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매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건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취득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는 성산동 595번지 1호상의 대지로 면적은 399.5㎡(약 121평)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으며 취득가액은 6억 5백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지역은 저소득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성산 임대아파트가 인근에 있어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사료되나,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약 3,500여명의 장애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지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난 '99. 8. 4.서울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및 변경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2000년도 공(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1999.11.
제 출 자: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아직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성산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구립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지목	소 계 지 면적(㎡)					
1	대지	마포구 성산동 595-1	399.5	605,000	2000년도 1/4분기	장애인종합 복지관부지	○ 토 지 대 장 : 서울특별시 ○ 실 소 유 자 : 서울 특별 시 도시개발공사 매입

3. 근 거

- 지방재정법(1999.5.24 법률 제5982호) 제77조
-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 제35조제1항제6호
- 지방재정법시행령(1999. 4.30 대통령령 제16267호) 제84조제2항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1999.10.11 조례 제434호) 제36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조례시행규칙(1999.11.10 규칙 제314호) 제29조

첨부 공(구)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공(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연도관리 계획 총괄표(6-1)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계	토지	1	399.5	605,000				1	399.5	605,000	
		건물										
		기타										
득	1. 매입	토지	1	399.5	605,000				1	399.5	605,000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으로	건물										
	취득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으로	건물										
	처분	기타										

연도관리 계획 총괄표(6-2)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 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지	성산동 595-1	399.5	605,000	2000년도 1/4분기	장애인을 위한 구 립 장애인 복지관 건립	○ 실소유자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토지대장 - 서울특별시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제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6-4"를 참조

성산장애인복지관 건립예정지 위치도

